

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383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17. 4.

제출자 : 달성군수



1. 의결주문

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『국민기초생활보장법』 및 2017년 자활사업 안내 지침 개정에 따라 『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』를 개정하여 자활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자활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자활기금 용도 확대(안 제3조)

-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 보강 사업비 지원
- 군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및 참여자의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

나.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을 자활근로사업단으로 변경하여 지원대상 확대(안 제4조)

다.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이자 인하(안 제7조)

- 제4항 대여자금의 이자는 “연 2%”를 “연 1%”로 변경
- 라. 전세점포 지자체 임대지원에서 자활근로사업단 등 점포 전세금 대여 지원으로 변경(안 제10조)
- 마. 기금운용심의 위원회 운영에 있어 사회복지관련 위원회 또는 협의체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정정(안 제15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(1) 『국민기초생활보장법』 제16조, 제18조, 제18조의4
- (2) 『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』 제26조의 4,
- (3) 『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』 제19조
- (4) 2017 자활사업 안내 지침
- (5) 참고자료

나. 예산조치 : 별도예산 필요 없음

다. 기타사항

- (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- (2) 성별영향평가 : 원안 동의
- (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 동의
- (4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- (5) 입법예고
 - (가) 예고기간 : 2017. 3. 10. ~ 3. 30.(20일간)
 - (나)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- (6) 비용추계서 : 생략(『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』 제9조제5항제1호에 의거)

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호 중 “전세점포 임대지원”을 “점포 전세금 대여”로 하며, 같은 조제 8호를 제10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사업비 지원

9. 군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및 참여자의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

제4조제1호 중 “ 및 영 제3조의2”를 “ 및 법 제2조제10호와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3조”로 하고, 제4조제2호 중 “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”을 “자활근로사업단”으로 하며, 제5조제2항 중 “대여”를 “지원”으로 한다.

제7조제4항 중 “연2%”를 “연1%”로 한다.

제10조 제목 “전세점포 임대지원”을 “점포 전세금 대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전세점포 임대 지원”을 “점포 전세금 대여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전세금은 2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자활기업, 자활근로사업단이 속해 있는 군지역자활센터 및 개인 창업자에게 대여한다. 단, 개인 창업자에 대해서는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여할 수 있다.

제10조3항 중 “전세점포 지원”을 “전세금 대여”로 하고, “단위의 임대계약을 원칙으로 하되”를 “단위로 설정하되”로 하며, 같은 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④ 제2항에 따른 대여전세금의 이자는 연1%로 하고, 연체기간 동안의 이율은 연 15%로 하며, 제3항에 따른 대여기간 중 대여전세금의 임의상환이나 제5항에 따른 상환의 경우 그 이자는 일할로 계산한다.

제1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군수는 점포 전세금을 대여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3항에 따른 기한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대여전세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.

제10조제5항제3호 중 “사용수수료”를 “제4항에 따른 이자”로 하고, 같은 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대여전세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그 전세점포를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전대한 경우

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군수는 제1항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 또는 협의체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.

제16조제3항 본문 중 “연임”을 “2회에 한하여 연임”으로 하고, 제17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위하여 연 2회”를 “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 2회”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문 대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사업의 범위)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.</p> <p>1.~ 2.(생략)</p> <p>3. 자활기업, 자활근로사업단, 개인 창업자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<u>전세 점포 임대지원</u></p> <p>4.~ 7.(생략)_ <u><신설>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8.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성군수(이하 “군수” 라 한다)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p> <p>제4조(지원대상)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군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 · 기관 ·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</p> <p>1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<u>영 제3조의2</u>에 따른 차상위계층</p> <p>2.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, <u>시장진입형 자활 근로사업단</u></p> <p>3.~ 5.(생략)</p>	<p>제3조(사업의 범위) ----- -----.</p> <p>1.~ 2.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---<u>점포 전세금 대여</u></p> <p>4.~ 7.(현행과 같음)</p> <p>8. <u>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사업비 지원</u></p> <p>9. <u>군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 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 ·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및 참여자의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</u></p> <p>10.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성군수(이하 “군수” 라 한다)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p> <p>제4조(지원대상)----- ----- -----</p> <p>1.----- ----- <u>및 법 제2조제10호와 같은 법 시행령</u> 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3조-----</p> <p>2. ----- -----, <u>자활근로사업단</u></p> <p>3.~ 5.(현행과 같음)</p>

<p>제5조(지원신청)</p> <p>①(생략)</p> <p>②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<u>대여</u>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정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제7조(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및 상환)</p> <p>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2%로 하되 상환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15%로 연체이자를 적용한다.</p> <p>⑤ ~ ⑦ (생략)</p> <p>제10조(<u>전세점포 임대지원</u>) ① 제3조제3호에 따른 전세점포 임대 지원대상은 자활기업, 자활근로사업단, 개인 창업자 중에서 수익성이 높고 작업장 또는 점포확보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결정한 경우에 한한다.</p> <p>② 전세점포는 전세보증금 2천만원부터 1억원의 범위에서 군수가 임차하여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 속해 있는 군지역자활 센터 및 개인 창업자에게 대여한다. 단, 개인 창업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에 한한다.</p> <p>③ 전세점포 지원기한은 1년이나 2년 단위의 임대계약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3회(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)에 걸쳐 이를 연장해 줄 수 있다.</p> <p>④ 전세점포 사용수수료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약정 이율 연1%로 하되 연체시 연 15%로 한다.</p>	<p>제5조(지원신청)</p> <p>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지원 ----- -----.</p> <p>제7조(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및 상환)</p> <p>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연1%----- ----- -----.</p> <p>⑤ ~ ⑦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0조(<u>점포 전세금 대여</u>) ①----- -----점포 전세금 대여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전세금은 2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자활기업, 자활근로사업단이 속해 있는 군지역자활센터 및 개인 창업자에게 대여한다. 단, 개인창업자에 대해서는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여 할 수 있다.</p> <p>③ 전세금 대여-----단위로 설정하되----- (-----)----- -----.</p> <p>④ 제2항에 따른 대여전세금의 이자는 연 1%로 하고, 연체기간 동안의 이율은 연 15%로 하며, 제3항에 따른 대여기간 중 대여전세금의 임의상환이나 제5항에 따른 상환의 경우 그 이자는 일할로 계산한다.</p>
---	--

<p>⑤ 군수는 점포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.</p> <p>1. ~ 2. (생략) 3. 사용수수료를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4. 전세임대한 점포를 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</p> <p>제15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· 운영)</p> <p>①(생략) ② 군수는 제1항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 또는 협의체가 제16조부터 제17조에 준하는 구성과 운영이 이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위원회 또는 협의체가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.</p> <p>제16조(위원회 구성)</p> <p>① ~ ② (생략)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</p> <p>제17조(위원회 운영)</p> <p>①(생략)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개최이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.</p> <p>1. ~ 2. (생략) ③ ~ ⑥ (생략)</p>	<p>⑤ 군수는 점포 전세금을 대여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3항에 따른 기한에도 불구하고 자체 없이 대여전세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 3. 제4항에 따른 이자----- 4. 대여전세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그 전세점포를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전대한 경우</p> <p>제15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· 운영)</p> <p>①(현행과 같음) ② 군수는 제1항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 또는 협의체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.</p> <p>제16조(위원회 구성)</p> <p>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<u>2회에 한하여 연임-----.</u> -----.</p> <p>제17조(위원회 운영)</p> <p>①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 2회 ----- -----. 1. ~ 2.(현행과 같음) ③ ~ ⑥ (현행과 같음)</p>
---	---

□ 국민기초생활보장법

제16조(지역자활센터 등)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,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(이하 이 조에서 "법인등"이라 한다)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 수행능력·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2.30.>

1.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
2.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, 상담,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
3.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
4.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·경영 지도
5.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설립·운영 지원
6.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

② 보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지역자활센터의 설립·운영 비용 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
2. 국유·공유 재산의 무상임대
3.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

③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④ 지역자활센터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효과적인 자활 지원과 지역자활센터의 발전을 공동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자활센터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.

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활센터의 신청·지정 및 취소 절차와 평가, 그 밖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2.2.1.]

제18조(자활기업)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자활센터, 제15조의3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
2. 국유지·공유지 우선 임대
3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
4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

5.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

④ 그 밖에 자활기업의 설립·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

제26조의2(자활기금의 설치) ① 법 제18조의 3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 또는 시·군·구에 설치할 수 있다.

제26조의4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.

1.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(補填)
2.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
3.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
4.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
5.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
6.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
7.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
 - 가.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
 - 나.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
8.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
9. 자활사업 연구·개발·평가 등을 위한 비용
10. 수급자 및 차상위자(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)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「국민건강보험법」, 「국민연금법」 또는 「고용보험법」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

[전문개정 2011.9.8.]

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

제19조(자금의 대여 등)

⑥ 자활자금의 대여한도·이율·거치기간 및 상환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2.2.14.]

□ 지방재정법

제34조(예산총계주의의 원칙)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.

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제1항 및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·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.

제85조(채권·채무의 관리와 그 사무의 위임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의 채권과 채무를 관리하되,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을 각각 "채권관리관" 및 "채무관리관"이라 한다.

③ 채권관리관은 현금 수납의 직무를 겸할 수 있으며, 채무관리관은 현금 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. 다만, 정원이 지나치게 적어 동일인이 그 직무를 겸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[전문개정 2011.8.4]

제86조(채권의 보전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게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. [전문개정 2011.8.4]

제87조(관리의 방법 등) ① 채권 관리에 관한 사무는 채권의 발생 원인이나 채권의 내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이 생겼을 때에는 자체 없이 채무자, 채권금액 및 이행기한, 그 밖에 관련되는 모든 사실을 확인하여 장부에 적고,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.

③ 채무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.

④ 관리 대상이 되는 채권·채무의 범위, 채권의 보전 및 그 밖에 채권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[전문개정 2011.8.4]

□ 지방자치법

[시행 2012.9.22] [법률 제11399호, 2012.3.21, 일부개정]

제142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③ 제1항에서 "재산"이란 현금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.

□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: 별표

4. 자활기업 등에 대한 전세점포임대 및 사업자금 대여
 - 가. 전세점포임대 및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1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.
 - 나. 전세점포임대 기간은 최장 6년이며, 사업 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1년거치 4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.
 - 다. 전세점포임대 및 대여자금의 이자율은 연 1퍼센트로 하되, 연체이자는 연 15퍼센트로 한다.

□ 2017 자활사업 안내 주요내용

①자활기금

(3) 기금의 용도 p209
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보장비용의 재원으로 다음의 용도로 사용
 -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
 -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,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
 -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(희망키움통장(Ⅰ,Ⅱ), 내일키움통장 등)
 - 일을 통한 탈수급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
 -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
 - 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사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자활연수원 교육훈련 참가 제비용
 -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(전문 컨설턴트와 연계한 창업 컨설팅 지원, 창업 후 3년 이상 지원대상 자활기업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지원,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)
 - 자활기업 또는 저소득층의 생업자금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
 - 자활사업 연구·개발·평가 등을 위한 비용
 - 전국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,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증진을 위한 사업에 기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중앙자활센터에 사업비 위탁 및 해당 시·도 자활기금의 일부지원 가능
 -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
 - * 자활기업의 규모화, 유통망 구축, 시설지원, 품질향상 사업 지원, 자산형성 지원, 사회보험료지원 등 근로빈곤층의 자활지원을 위해 선제적이고, 다양한 용도로 기금 활용

(3) '17년도 기금운용계획

2) 기금사업 내용 212p

○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

- 대여대상 : 지자체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활기업
- 대여금액 : 자활기업당 1억 원의 범위,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의 경우 5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자활기업 및 해당 사업단의 사업규모,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·도지사 또는 시·군·구청장이 결정
- 이자율 : 고정금리 연 3.0%이내(연체이율은 시중은행 연체금리의 50%이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함)

*** 고정금리 연 3.0% 이내에서 해당 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이율**

○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

- 자활사업 지원, 취업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 비용, 자활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비용,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사업비, 임대료 지원 등으로 적극 활용